

2011112513

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
- 1. : ()
- [: ()]
- 2. : 가 111
dh 2 512- 514
- 3. : 2024 06 11
(: 2011 11 23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
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
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.



2024 6 27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

